성주군 클린성주 친환경농촌만들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(김명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

발의일자 : 2013년 4월 일
발 의 자 : 김영래, 백철현,
이성재, 김명석,
배명호, 이수경,
이화숙

1. 제정이유

○ 각종 영농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및 들녘환경 미관 저해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여 우리 군의 주력 상품인 명품 “성주참외”의 브랜드가치를 지속 유지함으로써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함.

○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오염을 사전 예방하고 깨끗한 들녘환경 조성 사업을 통해 친환경농촌을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함.

2. 주요내용

○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 정의(안 제1조～제2조)

○ 클린성주 친환경농촌 만들기를 위한 적용대상 정의(안 제3조)

○ 클린성주 친환경농촌 만들기를 위한 군수 및 군민의 책무(안 제4조)

○ 클린성주 친환경농촌 만들기를 위해 실행계획 수립·시행, 실천운동전개, 군민참여, 환경지도자운영, 사회단체 활동 등의 조항 명시(안 제5조～제9조)

○ 들녘환경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10조～제16조)

○ 그 밖에 협의체 구축 및 구성, 행·재정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17조～제19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「지방자치법」 제9조 및 제22조

나. 예산조치 : 해당부서와 협의

다. 기 타

○ 조례안예고 : 의견없음〔2013. 5. 13～ 5. 22(10일간)〕

성주군 조례 제 호

성주군 클린성주 친환경농촌 만들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성주군민의 환경의식 제고와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명품 성주참외의 브랜드가치를 지속적으로 유지·보전하기 위한 클린성주 친환경농촌 만들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.

1. “클린성주 친환경농촌”이란 깨끗하고 쾌적한 들녘환경 및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명품 성주참외의 브랜드가치를 높이며 군민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성주군(이하 “군”이라 한다)을 말한다.
2. “환경지도자”란 클린성주 친환경농촌 만들기 사업의 홍보 및 환경개선 임무를 선도적으로 수행하는 리(里)별 추진리더로서 성주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가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.
3. “클린 정비대상”이란 군 들녘(이 조례에서 “들녘”이라 한다)에 무분별하게 적재되거나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는 다음 각 목의 물질 또는 물건을 말한다.
 가. 참외덩굴, 농업부산물 등
 나. 폐비닐, 보온덮개, 차양막
 다. 작업장, 퇴비장, 각종 쓰레기
 라. 그 밖에 사용하지 않는 영농자재

제3조(적용대상) 클린성주 친환경농촌 만들기는 명품 성주참외 재배지역과 그 인접지역, 들녘(배수로나 도로·하천·구거 등을 포함한다. 이 조례에서 같다) 및 해당 지역주민을 적용대상으로 한다.

제4조(책무) ① 군수는 클린성주 친환경농촌 만들기 사업 전반에 대하여 종합 조정하며, 그 실행계획을 수립·시행한다.

② 군민(군의 주민을 말한다. 이 조례에서 같다)은 클린성주 친환경농촌 만들기 사업에 적극 동참하고 깨끗한 들녘환경 및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한다.

제2장 실행계획 및 실천운동

제5조(실행계획 수립·시행) ① 군수는 환경의식 선진화 및 환경개선을 위하여 실천운동 전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성주군 클린성주 친환경농촌 만들기 실행계획(이 조례에서 "실행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한다.

② 군수는 실행계획에 관하여 군민 교육 및 농업인 지도를 실시한다.

제6조(실천운동 전개)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행계획에 따라 클린성주 친환경농촌 만들기 실천운동(이 조례에서 "실천운동"이라 한다)으로 적극 전개하여야 한다.

1. 군민이 제2조제3호의 클린 정비대상을 들녘에 적재하거나 무단투기·소각하지 않도록 홍보·계도하여야 한다.
2. 군민이 작업장 및 퇴비장을 잘 정비하여 깨끗한 작업환경과 친환경 들녘을 만들 수 있도록 지도·계몽하여야 한다.

② 군민은 실행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실천하여야 한다. 이와 관련하여 제11조의 심사 결과를 각종 농업 보조사업의 대상자 선정 시 반영할 수 있다.

1. 제2조제3호의 클린 정비대상을 들녘에 적재하거나 무단투기·소각하지 않아야 한다.
2. 작업장 및 퇴비장을 잘 정비하여 깨끗한 작업환경과 친환경 들녘을 만드는데 노력하여야 한다.

제7조(군민 참여 및 지원) 군민은 제6조에 따른 실천운동 전개에 적극 참여하고 협조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실천운동 전개에 필요한 각종 장비, 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8조(환경지도자 운영) ① 군수는 실천운동의 효율적 전개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리(里)별로 3명 이내의 환경지도자를 위촉·운영할 수 있다.

② 군수는 환경지도자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각종 장비, 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③ 군수는 실천운동의 실적이 우수한 환경지도자에 대하여 표창하거나 선진지 견학, 해외연수 등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.

제9조(사회단체 활동 등) ① 군의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회단체는 실천운동에 관한 사항을 사업계획에 명시하고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.

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실적을 다음 연도 해당 보조금의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때 반영할 수 있다.

제3장 들녘환경심사위원회

제10조(설치 등) ① 군수는 클린성주 친환경농촌 만들기 정착을 위하여 성주군 읍·면별 들녘환경심사위원회(이 조례에서 "위원회"라 한다)를 설치한다.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읍·면의 실정에 맞게 조정, 운영할 수 있다.

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위원장은 읍·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.

④ 위원은 읍·면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.

1. 깨끗한 들녘환경 조성에 관심이 많은 읍·면 주민
2. 읍·면 산업담당, 업무담당자

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공무원인 위원 중 업무담당자로 한다.

제11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클린성주 친환경농촌 만들기에 관한 사항을 협의 또는 심사한다.

1. 환경오염 예방에 관한 사항
2. 제6조제2항에 따른 실천운동 결과 심사
3. 환경지도자 추천 및 운영
4. 그 밖에 군수나 읍·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

제12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사무를 총괄한다.
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13조(위원의 임기)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. 다만, 임기 중인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.

제14조(위원의 위촉 해제) 읍·면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.

1. 스스로 사임을 원할 경우
2. 사망,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
3.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
제15조(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운영규정으로 정한다.

제16조(실비 지급)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성주군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」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제4장 협의체 지원

제17조(협의체 구축) 군수는 클린성주 친환경농촌 만들기 사업의 전문성 확보와 실무를 조정·협의하기 위하여 협의체를 구축하고 그 추진에 대하여 노력한다.

제18조(협의체 구성) 클린성주 친환경농촌 만들기 추진협의체 구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 추진한다.

제19조(행·재정적 지원) 군수는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협의체 구축과 클린성주 친환경농촌 만들기 사업의 확산을 위하여 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5장 보칙

제20조(단속) 군수는 제6조제2항제1호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고발 등 단속을 해야 한다.

제21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